
2013년도 반부패 · 청렴정책 추진계획(안)

2013. 6.



목 차

I. 2013년도 반부패·청렴정책 환경	1
II. 2013년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목표 및 방향	2
III. 2013년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 세부계획	3
1. 반부패 인프라 구축	3
2. 정책 투명성·신뢰성 제고	4
3. 부패유발요인 제거·개선	6
4. 공직사회 청렴의식·문화 개선	7
5.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	8
IV. 향후 추진 일정	9
V. 2013년도 반부패·청렴정책 세부계획 추진일정 ...	10
[붙임1] 일상감사 대상 업무	12

□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은 낮은 편임

- '12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'12년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76개국 중 45위로 전년도에 비해 2단계 하락
 - 특히, OECD 회원국 기준으로 34개국 중 27위
- 세계경제포럼의 '12년도 국가경쟁력은 19위, 그러나 국가청렴도와 관련된 정책투명성은 133위로 저조

□ 공직사회 청렴도가 국민의 눈높이(요구 수준)에 여전히 미흡

- 범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, 공공기관 청렴도가 계속 답보 상태이며, 일반국민은 공직사회가 여전히 부패하다고 인식('12년 42.4%)
-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, 공공기관>교육청>중앙행정기관>지자체 순서로 중앙행정기관의 반부패·청렴도 제고 요구

□ 「국민행복, 희망의 새 시대」를 위한 반부패·청렴정책의 강력 추진

-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부패 개혁 요구 분출에 대한 부응 필요
-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으로 국민 신뢰 회복의 국정 기조 달성을 위한 반부패·청렴정책 강력 추진과 제재 요구 증대
 - (대통령 말씀) 99%의 공무원이 깨끗해도 1%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('13.1.30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)

□ 우리부 대외적 신뢰 향상을 위한 반부패·청렴시책의 강화 필요

- 그동안 청렴도 미흡 평가는 문화예술진흥 부처로서 이미지 손상
- 문화융성 선도 부처로서 자존감 회복을 위하여 반부패·청렴시책의 강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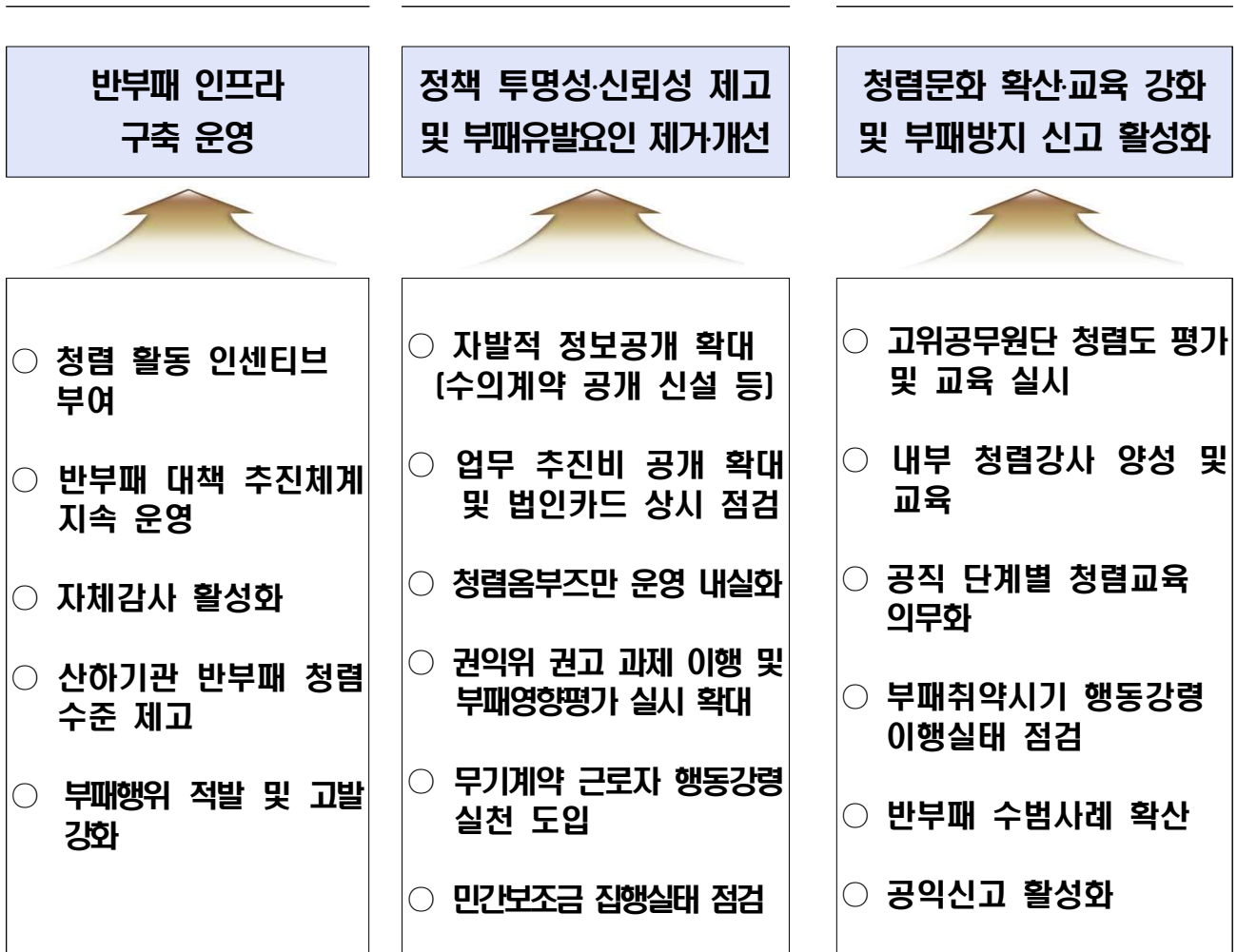
□ 2013년 목표

- 청 렬 도 : 2012년 II등급 → 2013년 현행 유지(또는 I 등급)
- 반부패 경쟁력 : 2012년 III등급 → 2013년 II 등급

※ 5단계 평가: 등급(매우 우수), II등급(우수), III등급(보통), IV등급(미흡), V등급(매우 미흡)

□ 추진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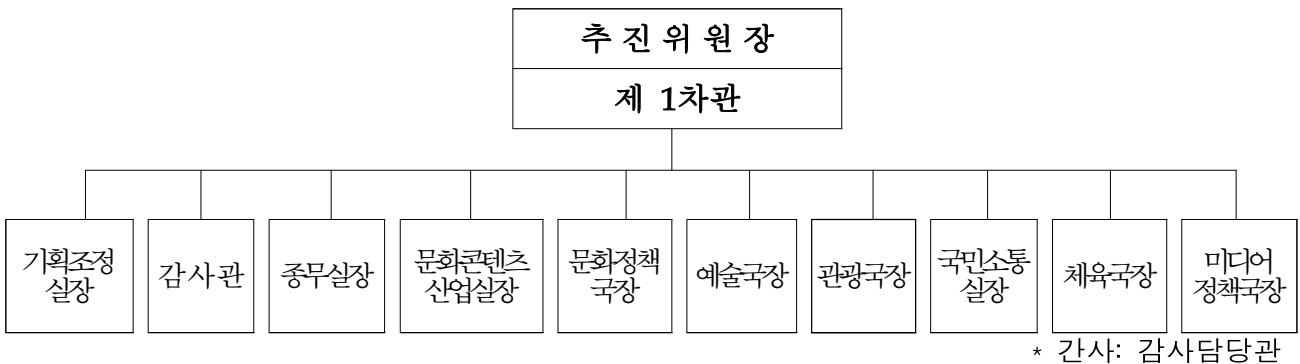
“ 깨끗하고 신뢰받는 문화행정, 문화융성 선도 ”



1. 반부패 인프라 구축

□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

-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(신설) (추진 : 인사과, 감사담당관실)
 - 청렴활동 우수자*에게 연말 국외 단기 교육훈련 우선 기회 제공
 - * 부패방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출, 청렴 자체실무기획단 운영실적 등 청렴업무 전반을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선발
-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 지속 운영 (추진 : 감사담당관실, 실국, 소속기관)



- 상·하반기 정례적으로 개최(필요시 수시 운영)
- 청렴도 향상 추진전략 및 고공단 청렴평가 방향 등 심의
- (실국·소속기관)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 실무기획단 구성·운영
- 소관업무관련 부패유발요인 분석, 제도개선, 청렴향상 대책 마련 등

□ 자체감사 활성화

- 반부패 청렴 업무 전담인력 지정 (추진 : 감사담당관실)
 - 청렴업무 전담인력을 자체감사기구 인원 대비 20% 이상(3명) 확보
 - ※ 2013.5.20. 현재 청렴업무 전담인력 : 0명

-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참여
(추진 : 실국, 소속기관, 감사담당관실)
- 일상감사* 등을 통해 주요 업무 또는 기능 수행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(※ 평가 사항 : 우수사례 2건)
- * (일상감사) '11.7월 시행, '12년 추진 실적 : 12건, 대상 업무는 불임1참조
- 부패행위 등 적발 및 행위발견 시 고발 강화 (추진 : 감사담당관실)

□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

(추진 :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, 감사담당관실)

- 「2013년 기타공공기관장 및 단체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」 계획 수립('13.10월)시 '반부패 청렴도' 평가 지표 반영(신설)
- '13.10월 이전까지 계획 수립, '14. 6월에 평가 결과 도출

2. 정책 투명성·신뢰성 제고

□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강화

(추진 : 정보통계담당관실, 운영지원과, 실국, 감사담당관실)

-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추진
- 홈페이지에 '수의계약 현황' 공개란 신설(7월 / 본부 시범운영)
- 반부패 청렴 자료, 자체감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지속 등재

□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

-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범위 확대 추진
(추진 : 운영지원과, 소속기관, 정보통계담당관실)
- 장·차관의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의무적 공개 (총액, 건수, 건별 내역 등 포함)

- 실장급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기별 홈페이지에 공개(신설)
- 소속기관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로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(신설)

※ '12년 : 국립국어원장, 국립국악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

○ **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 점검 체제 운영(신설) (추진 : 소속기관)**

- 특이사항(심야 사용, 주말 사용, 집 주변 사용 등) 발견 시 소명 등 사후조치 실시(엑셀프로그램 및 수기 점검 / 증빙자료 추후 제출)

ex) 국립현대미술관 '상시 점검 체제' 사례

과제명	과제 내용	추진실적
정부 구매 카드 사용대장 작성 및 국고예금통장 상시감사	- 모든 부서의 정부구매카드의 결제내역 상시 모니터링 및 일상감사, 전 직원에 대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상시 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구매카드 사용대장(매일 기재) ○ 국고예금통장 잔액증명서(매월 말 발급) ○ 예산회계시스템(d-Brain) 각종 대장(수시 확인) ○ 정부구매카드 사용 및 위반사례에 대한 안내 및 보고(매월 말) ○ 회계집행 위반자 사례 및 문제점 분석 후 기관장 보고 : 6월말, 12월말

□ **청렴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(추진 : 감사담당관실)**

- 청렴옴부즈만('12년 도입, 3명 위촉)을 통한 고충(악성)민원에 대한 갈등 관리 및 국민고충 해결
 - 각 실·국 수요(감사담당관실 자체판단)에 의하여 고충(악성)민원을 선별하여 청렴옴부즈만에게 조사 요청(연간 활동횟수 : 4회 이상)
 - * “고충민원”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(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)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
- 훈령 등 행정규칙에 대한 청렴옴부즈만의 선별적 부패영향평가 실시
 - 제3자의 입장에서 훈령 등의 불확정 개념, 공백규정, 비현실적인 기준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

3. 부패유발요인 제거·개선

□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(추진 :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, 실국)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(과제 10개, 세부과제 41개) 이행 추진
 - 동 과제를 정해진 조치기한 도래 전에 수용여부 결정 및 추진
 -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,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에 대해 적극협조
- ※ '12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시 미흡했던 과제로 '13년도에 중점관리 필요

□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

- 제·개정 법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수용 및 평가요청 기한 준수 (추진 : 실국, 소속기관)
 - '12년도에 권고한 과제만을 평가대상으로 함
 - 법령 평가 요청 시기는 '관계기관 협의 시(4일 이내)'임
-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
 -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훈령(또는 지침)에 명문화(신설 13.8월)
 - ※ 평가방법 : 자체 법제사무처리규정 제정 또는 내부지침으로 명문화(장관 결재)
(추진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)
 - 행정규칙 제·개정 시 사전에 자체 부패영향평가 실시(신설)
(추진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, 감사담당관실, 실국, 소속기관)
 - ※ <부패영향평가 절차> 제·개정(안) 마련(담당 부서) → 부패영향평가 요청(담당부서) → 감사담당관실 → 평가(감사담당관실, 또는 '청렴옴부즈만'에게 부패영향평가 의뢰)

□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

-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도입(신설, 6월) (추진 : 기관 전체)
 -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를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
 - 근로계약서상에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의무 부여

- 내부망 나루시스템 내 별도 “(가칭) 반부패·청렴” 코너 구축·운영 (신설 / 7월) (추진 : 감사담당관실, 정보통계담당관실)
 - 현재 산재된 업무 시스템(외부강의 신고, 청탁등록시스템 등)을 통합하여 구축 및 자료제공 통합 관리
- 실국, 소속기관별 고유 업무와 기능 수행과 관련된 반부패 자율 시책 자율 추진 (추진 : 실국, 소속기관)
 - 부패와 연관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·개선하되, 규정을 제·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개선의 성과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

□ **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** (추진 : 감사담당관실)

- 국가재정 누수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보조금 집행 관련 실태 점검 실시(6~7월)
 - 부서장 및 각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중요성 인식 제고
 - 정산 점검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부정행위 조기 발견 및 적정 대응

4. 공직사회 청렴의식·문화 개선

□ **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·노력 강화**(추진 : 감사담당관실)

- 고위공무원단 청렴도 평가 실시 (“13년 6~7월 중 예정)
 -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및 자기성찰의 계기 마련
 - ‘비난하기(blame)’가 아닌 ‘경고하기(warning)’의 접근을 통해 수용도 제고 및 향후 자기관리 및 솔선수범 유도
- 간부 및 직원들의 청렴서약서 및 다짐서 자율적 작성

□ **청렴교육 활성화**

- 내부 청렴강사 양성(신설) 및 교육 추진 (추진 : 감사담당관실)
 -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 교육(14시간 이수) 등을 통해 내부 청렴강사를 양성하여 소속 직원 대상 청렴교육 3회 이상 실시
-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명문화(신설/ '13. 9월)
 - 「2013 문화인재양성계획(‘12.12월)」에 공직 전환단계별(신규임용, 5급 승진, 고위직 진입 등) 청렴교육 이수 계획이 반영됨.
 - 「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규칙」 또는 「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」에 명문화(추진 : 인사과, 감사담당관실)
-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(집합교육) 실시 (추진 : 감사담당관실 등)

□ **반부패 수범사례 확산** (추진 : 감사담당관실)

- 청렴 협의체 조직 신설 및 운영
 - 문화체육관광부, 미래창조과학부, 방위사업청, 검찰청, 국무조정실 5개 기관에서 고위직·실무자 간 회의 등을 통해 각 기관의 반부패 시책 우수 자료 공유 및 전파
- 반부패 수범사례 등 홈페이지 공개 및 타기관 제공

5.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

□ **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**

- 명절 등 부패취약 시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·점검 강화 (추진 : 감사담당관실)

□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(추진 : 감사담당관실)

○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 기반관련 자체규정 필요시 제정 검토

- 현재 문화부 홈페이지(외부망)에 공익신고란 개설('12)→국민권익 위원회로 링크되어 운영 중임.

- 관련법률 : 공익신고자보호법(2011.3.29 제정, 2011.9.30. 시행)
- 공익신고 : 외부공익신고, 내부공익신고로 구분
- 공익침해행위를 ① 5대 공익분야(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)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②공익신고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③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되는 행위로 규정
- 우리부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
 - 공연법 :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확한 안전진단, 안전검사 미실시 등
 - 관광진흥법 : 관광시설 안정성 검사 미실시,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

○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제도 안내 강화

IV 향후 추진 일정

□ 반부패 경쟁력 평가

- 2013년 자체 반부패경쟁력 평가 추진계획 확정 (6월 초)
- 각 실·국, 소속기관별 관련 지표 추진 (6월 초~ 10월 말)
- 각 실·국, 소속기관별 담당 지표 성과 제출 (10월 말)

□ 청렴도 평가

- 청렴도 측정 대상자(민원인, 내부 직원, 업무관계자 등) 명부 제출 (7월)
-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실시 (8~12월)

구분	평가부문	단위과제	추진방안	추진부서	추진시기
A. 반부패 의지·노력 (90점)	① 반부패 인프라 구축 (15점)	1-1.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(4.5점)	· 청렴활동 우수자 단기 국외교육	인사과, 감사담당관실	10~12월
			·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 구축 · 실국, 소속기관별 자체 실무기획단 구성, 운영	감사담당관실, 실국, 소속기관	년중2
		1-2. 자체감사 활성화 (6점)	· 반부패 청렴 업무 전담인력 지정(3명)	감사담당관실	년중
			· 일상감사 활성화 등	실국, 소속기관, 감사담당관실	수시
			· 부패행위 적발 및 고발 강화	감사담당관실	수시
		1-3. 부패처벌 강화 (4.5점)	· 부패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절차 진행	인사과	-
	1-4.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(가점지표)	· 2013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부패청렴도 평가지표 반영	기획행정 관리담당관실, 감사담당관실	'13.9 ~ '14.6	
	② 정책투명성 신뢰성 제고 (15점)	2-1.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(6점)	· 자발적 정보공개 (반부패청렴자료, 수의계약 현황, 감사결과)	장외통계담당관실 운영지원과, 실국, 감사담당관실	수시 ※수의계약 공개 : 7월~
			· 업추비 사용내역 대상 공개 확대 (장·차관, 실장급, 소속 기관장)	운영지원과, 장외통계담당관실, 소속기관	분기별 (장·차관은 매월)
		2-2.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(6점)	·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 점검체계 운영	소속기관	수시
	2-3.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(3점)	· 청렴옴부즈만 운영	감사담당관실	수시	
	③ 부패 유발 요인제거·개선 (35점)	3-1.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(8.75점)	· 권익위 권고과제 수용 및 자료 협조	실국, 기획행정 관리담당관실	년중
		3-2.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(8.75점)	· 제·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수용 및 평가요청 기한 준수	실국, 소속기관	년중
			·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명문화 및 실시	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, 감사담당관실, 실국, 소속기관	년중
		3-3.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(8.75점)	· 무기계약 근로자 행동강령 실천 도입 · 반부패 청렴 코너(내부망)	실국, 소속기관, 감사관실	6월~ *반부패 청렴사이트

			통합 구축		구축(6~7월)
		3-4.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(8.75점)	·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	감사담당관실	6~7월
	④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개선 (20점)	4-1. 기관장 및 고위공 직자 반부패 의지· 노력 (4점)	·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 대상 설문조사		-
		4-2. 청렴교육 활성화 (4점)	· 고위공무원단 청렴평가 실시	감사담당관실	6~7
			· 내부청렴강사 양성	감사담당관실	년중
			·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명문화	인사과	6~9월
4-3.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(12점)	·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실시	감사담당관실 등	수시		
⑤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(15점)	5-1.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(7.5점)	· 청렴협의체 구성 반부패 수범사례 공개	감사담당관실	수시	
	5-2.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(7.5점)	·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	감사담당관실	수시	
B. 부패 방지 성과 (10점)	① 청렴도 개선(3점)	1. 청렴도 개선 정도 (3점)	·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관련 규정 신설 등	감사담당관실	필요시
	② 부패 공직자 발생(7점)	1. 부패사건 발생 정도 (7점)	·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	감사담당관실	수시
C.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	감점지표	1.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	·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관련 규정 신설 등	감사담당관실	필요시
			총점의 30%까지		-

일상감사 대상업무

1. 주요정책의 집행업무

- 가.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중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
- 나.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)

2. 계약업무

-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」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 경쟁입찰계약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
- 나.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
- 다.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%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(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)

3. 예산집행 업무

- 가. 예산의 이·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 증액 사업의 이·전용 감액 또는 국회 감액사업의 이·전용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경우
- 나. 우리 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,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한 업무추진비

4.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